

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운영지침



경 상 남 도

목 차

1. 시범사업 개요	1
2. 도입절차	2
3. 비자세부요건	3
① 전문인력(E-7-1)	3
② 일반기능인력(E-7-3)	5
4. 관련서식	
① 수요조사표	9
② 예비고용추천발급신청서	11
③ 고용추천서	12

1

시범사업 개요

☐ 근거

- 법무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('25.6.25.)
- 출입국관리법 제9조(사증발급인정서), 제10조의2(일반체류자격), 제17조(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), 제20조(체류자격 외 활동), 제24조(체류자격 변경허가), 제25조(체류기간 연장허가) 등

☐ 적용대상

- 특정활동(E-7)
 - 전문인력(E-7-1) 중 21개 직종, 일반기능인력(E-7-3) 중 3개 직종

☐ 운영기간

- '25. 7. 1. ~ '26. 12. 31.
 - ※ 단, 시범사업 운영 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

☐ 운영방법

- 경상남도가 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E-7 비자 24개 도입직종에 대해 광역형 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, 도지사추천서 발급함

☐ 사업시행

1. 사업규모

- 670명(전문인력 E-7-1 130명, 일반기능인력 E-7-3 540명)
 - 단, 동일 국가 추천 비율은 전체 배정인원의 30%로 제한됨

2. 시행지역

- 도내 전역(18개 시군), 시군별 제한인원 없음

2

도입절차

추진일정	업무담당	주요내용
사전수요제출	고용희망사업자 → 경남비자 지원센터	· 고용희망사업자는 광역형 비자 고용수요가 발생하면 ①고용희망 외국인 국가 및 인원수, ②외국인 고용직종, ③입국희망시기(기량검증 희망시기) 등 사전수요조사표를 경남비자지원센터에 제출한다.
(필요시) 취업연계	경남비자 지원센터	· 도내 수요기업-조건에 부합하는 근로자 취업 연계 지원 ·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비자(E-7) 전환 지원 · 지역특화형 비자(F-2-R) 전환을 위한 취업처 발굴 및 매칭 ※ 경남비자지원센터 플랫폼으로 통합관리 예정
기량검증 신청 및 실시	경남비자 지원센터	· 필요시 도입 희망 외국인의 국가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검증절차로 조선업 기량검증* 및 한국어 검증**을 실시한다. * 조선업 기량검증 세부사항은 광역형 비자 조선분야 운영지침 참고 **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또는 TOPIK 1급 수료한 경우 경남도 자체 한국어 검증 면제
예비 고용추천서 신청	고용희망사업자 → 경남비자 지원센터	· 고용희망사업자는 예비 고용추천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남비자지원센터에 제출한다.
예비추천	경남비자 지원센터 → 경상남도	· 고용희망사업자는 경남비자지원센터에 예비고용추천을 신청하고 경남비자지원센터가 이를 사전 검토하여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경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추천한다.
고용추천	경상남도 → 법무부	·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에 따라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 대상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할 추천서를 경남도지사가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.
사증발급	법무부	· 고용희망사업자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, 현지 송출국 관할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을 담당한다.

※ 고용희망사업자 등은 필요한 단계부터 신청(기량검증 또는 예비고용추천 등)

□ 전문인력(E-7-1)

1. 대상(도입직종) : 21개

- 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(S110), 기업 고위임원(1120), 경영지원 관리자(1212), 문화·예술·디자인 및 영상관련 관리자(1340), 정보통신관련 관리자(1350),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(1390), 건설 및 광업 관련 관리자(1411), 제품 생산관련 관리자(1413),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(2222),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(2223), 웹 개발자(2224), 화학공학 기술자(2321), 금속·재료 공학 기술자(2331), 전기공학 기술자(2341), 전자공학 기술자(2342), 기계공학 기술자(2351), 플랜트공학 기술자(23512), 자동차·조선·비행기·철도차량공학 전문가(S2353), 산업안전 및 위험 전문가(2364), 환경공학 기술자(2371), 가스·에너지 기술자(2372)

2. 자격요건

- 도입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
- 도입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3년 이상의 근무경력
- 해외 자회사에서 해당 분야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체(직종)로 도입 가능
 - ※ 단, 광역형 비자로 도입을 위하여 ①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, ②TOPIK 1급, ③경남도 자체 한국어 능력 검증 중 1개 통과(이수) 필수
- 국내 전문대학졸업(예정자)는 전공과목과 관련있는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1년 이상의 경력요건을 면제하고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
- 국내 대학졸업(예정자)는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하려는 경우 전공과목과 무관하게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

3. 고용추천

- 경남도지사 고용 추천, 단 전문인력(E-7-1) 직종 중 고용추천 필수는 기존 주무 부처* 장관 고용 추천 유지

* ①제품생산관련관리자, ②전기공학 기술자, ③전자공학 기술자, ④플랜트공학 기술자, 자동차·조선·비행기·철도차량공학 전문가, ⑤가스·에너지 기술자, 5개 직종의 국내복귀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(KOTRA) 고용추천서 발급 필수

4. 임금요건

- 연 2,867만원 이상('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)

* 법무부 공고 제2025-106호 '25년 특정활동 체류자격 임금요건 기준 공고('25.3.20)

5. 국민고용보호 심사기준

- 고용업체 규모 :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인 업체는 초청 제한
- 외국인 고용 비율 및 고용인원 판단 기준 등은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 매뉴얼 및 외국인 체류 안내매뉴얼(특별활동 E-7) 준용함

6. 활동범위

-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 및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(특정활동 E-7)에 따른 직종별 활동 범위 준수
- 광역형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비자 발급일로부터 경남 내 거주 및 취업 활동하여야 함

□ 일반기능인력(E-7-3)

1. 대상(도입직종) : 3개

- 조선용접공(7430), 선박 전기원(76212), 선박 도장공(78369)

2. 자격요건

○ 조선용접공

- (고용희망자) 고용희망자는 법무부 「사증발급 안내 매뉴얼」의 조선용접공 고용업체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

- 조선소, 선박관련 블록제조업, 조선기자재 업체*

- * 조선업 전업률이 50% 이상임을 경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 조선 기자재 업체

- 최근 1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상

- * 단 외국인력을 고용한 업체가 폐업한 경우, 동 업체를 승계하여 신규 설립한 업체의 경우 예외적으로 외국인 고용을 허용

-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

- * 단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(소규모 조선업체 특례대상)의 경우 면제

- 최근 2년 이내 법 위반 및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*

- * 다만, 이탈자가 발생한 경우라도 초청 업체가 업체의 건전성(납세실적, 국민고용 유지 여부), 근로자 관리의무 이행 사실 및 근로자 활용능력을 입증하는 경우 이탈일로부터 2년간 이탈 인원수를 고용 허용 인원에서 공제한 뒤 고용 허용

- (자격요건) 중급이상 조선용접공 자격증* 취득 + 현지 경상남도 자체 기량검증 통과 +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(또는 TOPIK 1급 수준)의 한국어 능력

- * 국내 조선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AWS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발급된 중급이상의 FCAW, GMAW, GTAW 용접기술 분야의 자격증

- ※ AWS(미국용접협회), ASME(미국기계기술자협회), ISO(국제표준화기구), EN(유럽표준), 국제선급협회[한국선급(KR), 미국선급(ABS), 영국선급(LR), 노르웨이·독일선급(DNVGL) 등]

- ※ 용접자세 중 아래보기(일반적으로 F, 1G로 표기) 및 수평(일반적으로 H, 2G로 표기)을 제외

- (고용추천서 발급) 경남도지사

- (근무처 변경) 근무처 변경 시 경남도지사 발급서류로 산업부장관 고용추천 대체

○ 선박 전기원

- (고용희망자) 경남도지사로부터 조선해양플랜트분야 고용추천을 받은 기업

- (자격요건) 관련분야 전문학사 이상 소지 + 현지 경남도 자체 기량검증 통과* +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(또는 TOPIK 1급 수준)의 한국어 능력

.. 관련분야 전공명 : 전공명에 전기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또는 선박의 전기설비 운용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출 수 있는 학위증명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

- (고용추천서 발급) 경남도지사

- (근무처 변경) 근무처 변경 시 경남도지사 발급서류로 산업부장관 고용추천 대체

○ 선박 도장공

- (고용희망자) 경남도지사로부터 외국인 도장기술자 초청이 적합하다고 추천을 받은 업체

· (업종)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종류가 ‘기타 선박 건조업’, ‘선박구성 부분품 제조’, ‘선박도장’, ‘도장’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

※ 한국표준산업분류상 31113(선박건조), 31114(선박구성부분품제조), 42411(도장공사업)

· (원청업체 협력) 도장기술자의 초청 및 입국 후 관리를 위한 원청업체와의 협력체계가 확인되는 업체

- (자격요건) 관련분야 전문학사 이상 소지 + 현지 경남도 자체 기량검증 통과* +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(또는 TOPIK 1급 수준)의 한국어 능력

.. 관련분야 전공명 : 화학, 화학공학, 재료공학, 조선공학, 건축공학, 자동차공학, 기계공학
· 상기 전공명에 해당하지 않으나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공인 경우, 도장관련 과목*을 3과목 이상 이수한 경우 인정 가능

* 도장관련 과목(예시) : 건축재료 계획, 건축시공, 자동차튜닝, 도장실무 등

- (고용추천서 발급) 경남도지사
- (근무처 변경) 근무처 변경 시 경남도지사 발급서류로 산업부장관 고용추천 대체

3. 임금요건

-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(GNI)의 80% 이상
- 도입 3년차까지 2,515만원 이상(25년 기준)으로 완화된 임금요건 적용
 - ※ 외국인의 경력·기량에 비례하는 적정임금보장을 위한 기준으로 신규채용이 아닌 기 도입인력(도입 2~3년차)의 임금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여야 함

4. 국민고용보호 심사기준 및 활동범위

-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 및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(특정활동 E-7)에 따른 직종별 활동 범위 준수
- 광역형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비자 발급일로부터 경남 내 거주 및 취업 활동하여야 함

5. 기타사항

- 원청(또는 가입조합) 및 도입업체 대상 공시된 자격요건 충족확인
- 신청가능 인원 : 보유 고용보험 가입 내국인(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3개월 미만 인원 제외) 대비 30% 이내
 - * 소규모 조선업체의 경우, 내국인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최소 5명 고용 허용, 연매출 20억 당 1명의 추가 고용 허용(1년 이상의 업력을 보유하고 중소기업기본법상 '소기업 확인서'로 확인되는 기업)

① (서식1) 수요조사표	9
② (서식2) 예비고용추천발급신청서	11
③ (서식3) 경상남도 고용추천서	12

경남 광역비자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 수요조사표

경남비자지원센터에서는 법무부가 운영하는 광역비자 시범사업으로 인력 채용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들에게 해외 송출 국가 현지에서 직접 인력을 모집하고, 한국어 및 기량검증을 통한 외국인 인력 채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.

※ 경남비자지원센터 기업지원 대상 비자 (특정활동비자) : E-7-1 (제조업 등 관리자 및 전문가, 전문인력)
E-7-3 (조선업, 일반기능인력)

제조업 등 (E-7-1)	조선업 (E-7-3)
- 도입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 - 도입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3년 이상 근무경력 - 한국어 능력 검증 필수 * 해외 자회사 해당분야 2년 이상 경력자 도입가능	- 조선용접공 : 중급이상 조선용접공 자격증 + 기량검증 통과 + 한국어 능력 검증 - 선박전기원/ 선박도장공 : 관련분야 전문학사 이상 소지 + 기량검증 통과 + 한국어 능력 검증

*참고 : E-7 비자와 E-9 비자 차이점

구분	직종	인력조건	인력선발	기타
E-7 비자 (특정활동비자)	생산관리자, 엔지니어 등 전문직종	학사 이상 학력 또는 관련 업무 3년 이상경력	채용자 선발 가능	1년 단위 지속 갱신, 타 비자 전환 가능
E-9 비자 (비전문취업비자)	공장, 건설현장 단기 노동자 등 비전문 직종	학력 및 경력 무관	무작위 배정	3년 후 조건부 연장, 타 비자 전환 제한

상기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기업들의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 의향 및 직종 수요 파악을 위한 수요조사를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2025년 7월 23일

- 주관기관 : 창원상공회의소 경남비자지원센터
- 접 수 처 : Tel. 055-210-3034~1, E-mail. fta@cwcci.or.kr)

기업명				대표전화		
주소						
기업분류	☐ 중소기업 ☐ 중견기업 ☐ 대기업		상시 근로자 수	내국인 명 외국인 명 (E7 ☐ E9 ☐ 그 외 ☐)		
업종			주력 생산제품 및 거래처(납품처)			
연매출액			근무시간	00 : 00 ~ 00 : 00		
잔업유무	유 ☐ (하루 평균 ____시간) 무 ☐		숙식 제공 유무	유 ☐ (근로자부담 ____만원) 무 ☐		
월 평균 급여	세전 ____만원		상여금 유무	유 ☐ 무 ☐		
채용담당자 정보	부 서 : 직 책 :		성 명 :			
	연락처 : 이메일 :					
해외 자회사 보유 유무	유 ☐ 무 ☐		해외 재직자 국내 도입 의향	유 ☐ 무 ☐		

전문기술 외국인력 예비고용추천신청서
(A Letter of Employment Recommendation for Special Foreign Worker)

신청인(고용업체)										
사업장명		소재지								
대표자		전화번호								
사업자등록 번호		업종 및 분야								
과거 1년간 매출 평균	20XX년(단위:원)									
상시근로자 수	명	생산품목								
추천신청 외국인										
총 _명										
성명 (Full name)	국적 (영문/한글)	생년월일 (성별)	연락처	최종학교명	학위	전공	졸업일자	경남한국어 능력평가	근무직종	계약임금
		0000.00.00 (남/여)								
		0000.00.00 (남/여)								
		0000.00.00 (남/여)								
		0000.00.00 (남/여)								
		0000.00.00 (남/여)								
위 신청인은 상기와 같이 전문기술 외국인력을 도입하고자 경남 비자지원센터에 예비고용추천을 신청합니다. 20 . . 신청인 ○ ○ ○ ○ ○ 대표 ○ ○ ○ (직인)										

광역형 비자 지방자치단체 추천서

추천기관	경상남도	대상	유학(D-2) ()
			특정활동(E-7) ()
인적 사항			
성명		발급번호	
생년월일		국적	
외국인등록번호		연락처	
거주지(체류자격 변경 시에만 기재)			
광역지역			
상세 주소			
세부 사항			
회사명 (학교명)		사업자등록번호	
소재지		연락처	
위 외국인을 법무부에 광역형 비자 발급대상자로 추천합니다. 20 . . . 추천기관 경상남도지사 (직인)			